



여객운송약관

목 차

제 1 조 (정 의)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2. 적용
3. 무상운송
4. 전세운송계약
5. 효력
6. 예고 없는 변경
7. 공동편 운항

제 3 조 (항공권)

1. 총칙
2. 항공권의 유효성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항공권의 제시
5. 항공권의 미소지, 분실 또는 이례
6. 항공권의 비양도성

제 4 조 (도중체류)

1. 도중체류의 허용

2. 도중체류의 사전조치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 적용 운임 및 요금

2. 미공시 운임의 산출

3. 경로

4.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5.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제 6 조 (경로변경, 운송불이행 및 접속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2.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제 7 조 (예 약)

1. 총칙

2. 예약의 조건

3. 예약의 재확인

4. 통신비

5. 예약의 취소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7. 여객의 공항도착

8. 개인 정보

제 8 조 (운송의 제한)

1. 운송거절, 예약취소 또는 강제하기

2. 조건부 운송인수

3.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4. 유아의 운송

5. 기내에서의 행위

6. 전자기기

제 9 조 (수하물)

1. 수하물의 운송

2. 수하물의 내용조사

3.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4.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5. 기내 휴대 수하물

6. 위탁 수하물의 인도

7. 초과 수하물 요금

8.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9. 특정 동물의 운송

10. 종가요금

11. 종가요금의 환불

12. 수하물표의 분실

13.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2. 취소

제 11 조 (환불)

1. 총칙

2. 통화

3. 환불절차

4.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6. 환불 위약금

7. 분실항공권

제 12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제 13 조 (숙박 및 기내식)

1. 숙박

2. 기내식

3.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의한 알선

제 14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2. 여권 및 사증

3. 세관검사

4. 정부의 규정

제 15 조 (운송인의 책임)

1. 연결운송인

2. 적용 법규

3. 책임의 범위

4. 제소원인

제 16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2. 제소기한

제 17 조 (법령 우선)

제 18 조 (수정 및 포기)

제 19 조 (약관의 정본)

제 1 조 (정 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양코르항공"이란 스카이양코르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정의된 국제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태리프"란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8. "계약조건"이란 항공권 또는 E-TICKET 예정/영수표 (Itinerary/Receipt)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9.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의 대리인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에 의하여 발행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

(ELECTRONIC TICKET)"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 알림 및 항공권의 모든 쿠폰(탑승용 쿠폰 및 여객용 쿠폰 포함)을 포함한다.

10. "여객항공권"이란 여객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1. "수하물 영수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동 위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2. "전자항공권"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E-TICKET 여정/영수표 (ITINERARY/RECEIPT) 및 전자쿠폰을 말한다.

13. "전자쿠폰"이란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말한다.

14. "E-TICKET 여정/영수표 (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5. "탑승용 쿠폰"이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의 운송이 유효하게 이행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전자항공권인 경우, 전자쿠폰을 말한다.

16. "여객용 쿠폰/여객용 영수표"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17.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 한다.

18. "제비용 청구서 (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환경인 경우 "전자 제비용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이하 "EMD"라 한다)"를 말한다.

19. "통상운임"이란 통상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활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운임규정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0. "특별운임"이란 통상운임 외의 운임을 말한다.

21. "환불 위약금"이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2. "예약 부도 위약금"이란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여객이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않고 당해 항공편을 미 탑승할 경우 또는 탑승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3.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24.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25. "위탁 수하물"이란 등록 수하물과 동의어로서 전적으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고 운송인이 수하물 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6.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7. "수하물표"란 전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증표로서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청구표로 구성된다.
28. "여객의 기내 동반 또는 위탁 가능한 반려 동물"이란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말한다.
29.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30. "소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1. "유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2. "왕복여행"이란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3. "일주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지점

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34. "오픈-죠 (OPEN-JAW)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출발지국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위 4 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5. "목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일주여행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지점이 된다.

36. "도중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7. "손해"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8. "프랑스 골드프랑"이란 순도 1000 분의 900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39. "미 합중국"이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48 개 연방주, 콜럼비아 특별구,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버어진 군도의 쌍크리아 및 센토마스, 아메리칸 사모아, 캐널 조운 및 캔톤, 괌, 미드웨이, 웨이크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40. "AREA1"이란 북미와 남미 대륙 및 이에 인접한 섬들, 그린란드, 베뮤다,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지역, 하와이 지역(미드웨이와 팔미라 포함)을 말한다.

41. "AREA2"란 유럽(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연방 포함)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아프리카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어센션 섬,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아시아 일부 및 이란과 중동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42. "AREA3"란 AREA2에 포함되는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우랄 산맥 동쪽의 러시아 연방, 동인도 제도, 호주, 뉴질랜드 및 이에 인접한 섬들, 태평양의 섬들(AREA1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을 말한다.

43. "대양주"란 아메리칸 사모아, 호주, 쿡 제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월리스 푸투나 제도를 말한다.

44. "SDR (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45. "종가요금"이란 위탁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그 가치를 스카이앙코르항공에 신고하고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적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스카이양코르항공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며 또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소비자 권리가 고려되도록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한다.

3. 무상운송

무상운송에 관하여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운송약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운송계약

스카이양코르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가 스카이양코르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여객은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변경

적용법령, 정부규정, 명령 및 지시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된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은 항공권 발권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7. 공동편 운항

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OZ)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스카이앙코르항공이 판매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하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9) 활주로 대기 지연에 대한 대비 및 대책 (미국 공항의 국제선 출·도착의 경우)

라. 스카이앙코르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카이앙코르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운송약관의 어떠한 계약 조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스카이앙코르항공 이외의 타 운송인이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당해 운송인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경우, 상기 다항의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항공권을 판매한 운송인이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바.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마케팅 항공사로 참여하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제휴 항공사가 운항하는 미국 출 도착 공동운항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규칙 14 C.F.R. § 259.4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 시 운항항공사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제 3 조 (항공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 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바 호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항공권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EMD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MCO/EMD 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한다. 적용 운송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EMD 는 제 1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용 쿠폰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스카이양코르항공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 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항치 아니한 경우

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스카이양코르항공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바)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건강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혹은 최종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항공편 중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으로 이용 가능한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주)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가족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라. 최단 체류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동반 가족에 대한 최단 체류요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 시 유보된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마. 최단 체류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 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바. 최단 체류요건이 적용되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 도중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요건은 유보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 (여객성명)" 이라고 항공권상에 이서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주)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항공권의 제시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한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탑승용 쿠폰 (전자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은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경유지(도중체류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객이 지불한 운임은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적용 태리프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여객과 스카이양코르항공 간의 운송 계약에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여객은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 순서를 건너뛰어 없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해당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권은 환불 또는 무효 처리된다.

나. 여객이 여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객은 스카이양코르항공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여정에 대하여 새로이 계산된 운임을 지불하는 방법 또는 여객이 원래 소지한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따라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스카이양코르항공과의 합의 없이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의 실제 여행에 적용 되는 운임을 부과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전체 운임의 차액을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임이 낮을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차액을 환불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라. 출발지 변경 (예를 들어, 여객이 첫 번째 구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여정의 방향 변경 등과 같은 변경은 운임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여객이 지불 완료한 운임은 항공권에 기재된 특정 날짜와 항공편에 한하여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마. 여객은 여행 중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송인이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을 제시하고 당해 쿠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자항공권이 아닌 경우, 여객은 해당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 및 다른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무자격자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전자항공권인 경우에는,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 및 여객의 성명으로 정당하게 발권된 유효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미소지, 분실 또는 이례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동권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여행 당일에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 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경우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 요청에 따라 신규항공권을 발행하

고, 이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당해 대체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스카이 앙코르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스카이앙코르항공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규항공권을 발행한다.

6. 항공권의 비양도성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도중체류)

1. 도중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스카이양코르항공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2. 도중체류의 사전조치

도중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스카이앙코르항공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변경되는 여정에 대해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 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2. 미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 개 지점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하여야 한다.

3. 경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이 그 경로를 결

정할 수가 있다.

4.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가.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5.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로변경, 운송불이행 및 접속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가.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스카이양코르항공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스카이양코르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변경된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단, 예약 부도 위약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다.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EMD 에 적용 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스카이양코르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스카이앙코르항공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여객이 일등석으로부터 이등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7 조 (예 약)

1.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통신 비용 (전신, 전화, 전보, 우편, 팩스사용료, 이

동통신전화료,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 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여객이 별개의 예약으로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3 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가. 사전취소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예약 부도 위약금

- 1)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않고 당해 항공편을 미탑승할 경우 또는 탑승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이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 2)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위약금을 각각 징수한다.

7.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개인 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 항공권 구입, 출입국 심사,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를 스카이양코르항공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카이양코르항공이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스카이양코르항공 지점 및 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1. 운송거절, 예약취소 또는 강제하기

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은 특정 여객을 운송 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도중에서 여객을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2)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나)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5)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여부를 조사키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6)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7)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이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의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9)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스카이양코르항공 또는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항공기 탑승 가능한 여객 수가 제한될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의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발생한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항공사 우대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 중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 되지 않은 여객 등의 순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여객,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2. 조건부 운송인수

가.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은 당해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 또는 동 결과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을 면책한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 스카이양코르항공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송된다.

나. 심신미약자, 질환자, 임산부 또는 비동반 소아 등에 대한 운송 시, 해당 여객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장애인 여객의 경우,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사항을 스카이양코르항공에 통보하여 운송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애나 특별 요청사항으로 인해 후속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애인 여객의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에 통보한 바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가. 만 5 세 미만의 소아, 유아는 만 18 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만 18 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동일 등급의 객실 내에서 동반되지 아니한 만 5 세 이상 12 세 미

만의 소아는 사전에 스카이昂코르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및 스카이昂코르항공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인수된다.

- 1)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출발지공항까지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그들과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공항에서 하기할 때 타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가 제출되고,
- 2)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이 기상상태 또는 기타 이유로 도중에 운항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를 경과할 우려가 없으며,
- 3) 예약 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이 서명한 스카이昂코르항공 소정의 면책서를 제출한 경우
- 4) 그 밖의 스카이昂코르항공이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 만 12 세 이상 17 세 미만 여객의 경우 상기 "나" 호에서 열거된 조건 총족 시 여객 선택에 따라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신청하되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징수된다. 출·도착지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신청시도 동일한 조건과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4. 유아의 운송

최초 여정이 시작된 이후 생후 24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여야 하며 그 운임은 적용 가능한 소아운임을 징수한다.

5. 기내에서의 행위

가.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한,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② 기내에서의 흡연

③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⑤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 73 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⑥ 항공기, 탑승객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⑦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⑧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⑨ 이외 기장, 승무원이 판단하기에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6. 전자기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수하물

1. 수하물의 운송

- 1)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송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적용 테리프(TARIFF)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 2)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하용 탑재량 초과 또는 안전 및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의 동의 없이 당해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당해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대의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 3)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이 규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4) 여객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5)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 본인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 운송을 의뢰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의뢰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수하물의 내용조사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안전과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통상적인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각 품목별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한다. 단,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나. 출발지,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다. 항공기, 여객 또는 재산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라.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쉽거나, 파손 및 손실 방지가 미흡하게 포장된 물품

마. 화폐 및 유가증권, 인지류, 귀금속 및 보석류, 미술품 및 골동품, 견본, 서류 등 귀중품과 부패성 물건 등

4.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가. 위탁 수하물은 1인당 최대 20킬로그램이고 3변의 합이 203cm인 수하물에 한하여 무료로 운송 가능하다. 단, 여객이 구입한 항공권의 운임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 회원의 등급에 따라 최대 허용량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구매한 운임에 따른다.

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단, 적용 운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하나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추가 허용된다.

라.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될 수 있다.

마. 휴대 수하물은 1인당 최대 10킬로그램이고 3변의 합이 115cm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상기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취급 운송될 수 있다.

바.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운송의 구간 또는 형태(정기편 또는 전세편), 품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

5.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나. 비행 중 취식할 유아용 음식물

다.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등의 보조기구

라. 교통약자가 필수적으로 취식 또는 이용하는 기타의 품목

상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 법률,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별도의 운송 신청 및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6.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여객은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 상 또는 시스템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3) 위탁 수하물은 그의 운송을 위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이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된다.

4)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인도된다. 단, 여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출발지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5)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 때,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자가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7)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본 조 제5 항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자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8) 수하물 청구표 소지자가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초과 수하물 요금

1)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는 날에 유효한 스카이앙코르항공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2)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이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스카이앙코르항공 규정에 따라 수량, 무게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3)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수량, 크기, 무게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4) 초과 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5) 스포츠 장비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는 스카이양코르항공에서 규정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각각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 체류지에서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 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8.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 1) 여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취소하거나 좌석을 예약한 항공편을 미탑승한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단, 사전 수하물을 구매한 경우 별도 규정을 따른다.
- 2) 여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과의 운송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특정 동물의 운송

- 1) 시각 장애인 안내견, 청각 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휴대 수하물로 무료 운송된다.
 -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해당 손해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고의 또 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이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여 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보조견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하네스 또는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 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휴대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가. 반려 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 동물의 무게 및 운반용 용기의 규격은 스카이앙코르항공 홈페이지(도움이 필요한 고객->반 려동물 동반 고객)에 기재된 규정에 따른다.

다. 본 항에 의거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반려 동물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당해 동물 및 용기의 총 중량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라. 여객은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운 송이 가능하다.

10. 종가요금

1) 본 조 제3항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 SDR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 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칠로그램당 미화 20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2)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이 행 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불 또는 그 단수액 당 미화 0.50불의 율로 징수한다. 적용 태리프(TARIFF)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 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증가된 가 격에 대한 종가요금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한다.

3)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 1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에 대하여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스카이앙코르항공과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종가요금의 환불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운송 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운송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여객이 여정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종가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12.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향후 스카이앙코르항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13.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상이함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스카이앙코르항공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문자전송, 전자메일,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단, 여객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임박시점(국제선 1 시간 이내)에서는 공항 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4 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소

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 입항 금지, 전쟁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스카이양코르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스카이양코르항공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자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운송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다. 여객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환불)

1. 총칙

가. 미사용 항공권, 그 쿠폰 또는 MCO/EMD 의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의한 환불은 제 6 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나.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 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 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다.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 를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제출해야 한다.

라.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 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MCO/EMD 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가) 유니버설 에어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트래블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나)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이하 "GTR" 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 을 발행한 정부기관에,

다)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자의 구좌에,

2)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3)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 또는 MCO/EMD 를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스카이양코르항공은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출국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위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 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사용한 통화,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 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단,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환불절차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스카이양코르항공의 각 지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환불을 행한다. 환불신청 시는 여객이 작성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소정의 환불신청서를 필요로 한다.

4.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 "가"호 내지 "나"호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 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하되 그 중 높은 금액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될 지점까지

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 (왕복 또는 일주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초 운임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다.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일등석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객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요구에 의해 일부의 운송구간에 대해서 이등석을 이용하게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편도 항공권의 경우

이등석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일등석 운임과 이등석 운임의 차액

2) 왕복여행, 일주여행 또는 오픈-조(OPEN-JAW) 여행의 경우

이등석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일등석 왕복운임의 50%와 이등석 왕복운임의 50%간의 차액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스카이양코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MCO/EMD 의 환불을 말한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특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환불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환불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라.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 간에 사용 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다"호 2)에 의거 결정한다.

6. 환불 위약금

환불 위약금은 항공권 태리프에 규정된 위약금이 징수된다.

7. 분실항공권

분실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서면신청의 접수 및 분실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의 접수가 있는 후에 분실된 항공권 또는 쿠폰을 환불한다. 이와 같은 문서에 의한 신청은 분실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에 당해 분실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타인의 제시에 의하여 환불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 제시됨으로써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비용 포함)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을 면책하게 하고, 여객 스스로가 스카이양코르항공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환불은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A.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i.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 ii.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성,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B.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 i.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

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을 환불한다.

ii.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C.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스카이양코르항공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분실된 MCO 에도 적용한다.

제 12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스카이앙코르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돋는 과정에서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숙박 및 기내식)

1. 숙박

가. 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스카이양코르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스카이양코르항공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기내식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내식은 무료 제공된다.

3.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의한 알선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이에 요하는 비용의 스카이양코르항공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 이외의 제 3 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스카이昂코르항공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스카이昂코르항공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 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스카이昂코르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스카이昂코르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스카이昂코르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스카이昂코르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스카이昂코르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스카이昂코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스카이昂코르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스카이昂코르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스카이앙코르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스카이앙코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운송인의 책임)

1. 연결운송인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스카이양코르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상기 "가"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스카이양코르항공 영업소 및 스카이양코르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 (단, 해당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으로 한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3.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제공하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실(이하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은 해당 손해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손해에 대한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나.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위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는 스카이앙코르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스카이앙코르항공이 행한 운송과 관련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여객 또는 여객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2 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113,100 SDR (2019년 12월 27일까지) 또는 128,821 SDR (2019년 12월 28일부)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0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인지 소송 이외의 청구인지를 불문하고 위 1)호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협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며, 제 3 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3)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상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라.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위의 다.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당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

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 지연에 대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바.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1)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국 달러화 약 20.00 불)을 한도로 하고,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에는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국 달러화 약 400.00 불)을 한도로 한다.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은 해당 위탁 수하물의 미인도/손해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은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2019년 12월 27일까지) 또는 1,288 SDR (2019년 12월 28일부)로 한다.

(3) 상기 (1) 또는 (2)의 규율을 적용 받지 않는 국제여객운송의 경우, 수하물 손해에 관하여 여객의 최종도착지에 적용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1)항에 따른다

(4) 위탁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본 운송약관 제 9 조 9 항에 의거하여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5)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6)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과실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스카이앙코르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7)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스카이양코르항공의 책임은, 해당 위탁 수하물의 미인도/손해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8)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신의 물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 또는 스카이양코르항공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타 여객 및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스카이양코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9)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위탁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혹은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및 여권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 또는 협약이 정하는 범위 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 스카이양코르항공은 본 운송약관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 또는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인도되어 접수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스카이양코르항공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아. 스카이양코르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것은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 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스카이양코르항공은 스카이양코르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및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스카이양코르항공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스카이양코르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를 가진다.

자. 본 항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차. 스카이앙코르항공이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사전에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었는지 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카.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상의 스카이앙코르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스카이앙코르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4. 제소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 및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된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스카이앙코르항공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2. 제소기한

스카이앙코르항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스카이앙코르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7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8 조 (수정 및 포기)

스카이앙코르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19 조 (약관의 정본)

본 운송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 판 운송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끝>